

여수시 삼산면 체육회장 선거관리 규정

제정 : 2020. 04. 02.

제1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여수시체육회 규약 제39조제1항 및 제41조에 따라 여수시 삼산면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이하 “회장선거”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본회 회장선거에 관하여 관계 법령, 여수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 또는 여수시 삼산면체육회 규약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3 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장 임기만료일 전 40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선거인 후보자 명부의 작성
2. 선거인 명부의 작성
3. 제7조및8조에 따른 선거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4. 후보자의 등록, 사퇴 및 후보자 공고에 관한 사항
5. 선거운동 관리 및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경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
6. 투표, 개표 및 당선인 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선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본회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하며, 본회에 비당원 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회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이사회에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되며 위원장은 호선하며 본회와 관계있는 사람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 단, 회장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육회 규약의 규정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려는 사람이 위원을 추천하고 이사회에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제 2 장 선거인 명부의 작성

제 4 조(선거인) ① 본회 규약 제20조 제1항에 따른 회장 선출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여수시 삼산면체육회 대의원
2. 여수시 삼산면체육회의 임원

② 선거인 또는 선거인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만 19세 이상일 것
2. 선거인이 제1항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사람인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선임을 받거나 인준을 받았을 것

제 5 조(선거인 후보자의 추천) 제4조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본회는 선거인 후보자의 추천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선거인 후보자 명단과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를 공문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선거인 명부의 작성)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본회가 추천한 선거인 후보자 명단을 토대로 중복여부 및 제4조 제2항에 따른 선거인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공고한 다음날부터 3일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다.

② 선거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선거인 후보자로 추천된 경우에는 재 추천 요청 없이 배제한다.

③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은 다른 선거인으로 교체할 수 없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확정된 선거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선거인명부의 열람)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에

열람기간을 정하여 선거인이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선거인명부의 열람 기간은 3일로 한다.

③ 선거인명부는 열람 기간 종료일 다음날 확정한다.

④ 후보자는 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일 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신청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선거인명부 이의신청) ①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 이 없는 선거인이 등재되었다고 인정되면,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이의신청을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가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3 장 후보자 자격 및 등록

제9조(후보자의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장선거 후보자가 될 수 없다.

1. 여수시 삼산면 거주자 중 3년미만 거주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부터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5.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 단체에서 재직 중에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나. 승부조작, 편파관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다.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6. 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의2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7. 국회의원

② 회장을 포함한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 만료일 전 6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제10조(기탁금) 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등록신청 시에 기탁금을 선거관리 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기탁금의 범위의 결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고, 기탁금 납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기탁금의 예치를 위하여 개설한 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한다)의 예금계좌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의 명의로 입금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입금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11조(후보자 등록) 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간 개시일(선거인명부 열람을 시작한 그 다음 날로 한다) 2일부터 2일 동안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등록신청서 접수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의 후보자 등록신청서
2. 주민등록초본
3.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4. 범죄사실 유무 증명 서류
5. 후보자가 소속한 경력이 있는 체육단체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발행한 후보자의 징계사실 유무에 관한 문서
6. 제12조에 따른 기탁금 또는 기탁금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퇴임 증명서는 본회의 임원이었던 경우에 한함
8. 기타 후보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한다. 다만,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등을 갖추지 아니한 등록신청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제9조 제1항의 후보자 자격에 관한 사항을 선거일 전 25일까지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마감 후에 후보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등 후보 등록 자격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⑥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⑦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후보자에게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2조(후보자 사퇴의 신고) 후보자가 사퇴하려는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선거관리 위원회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선거 및 선거운동

제14조(선거일)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의 임기만료일 전 10일까지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선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는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을 확정하고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 전일에 선거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선거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하며, 그 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10일 이내로 정한다.

제15조(선거운동의 정의)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항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의사의 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통상적인 업무행위

제16조(선거운동의 주체 및 방법) 후보자가 선거공보·선거벽보·전화·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7조(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정한다. 다만 후보자가 선거일에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금지행위 등)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지하거나 제한되는 행위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 제31조에서 제3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선거방법 등) ① 선거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한다.

② 투표는 선거인이 직접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투표는 선거인 1명마다 1표로 한다.

제20조(투표소의 설치 등)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일까지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1조(투표용지)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표시하되, 기호는 후보자의 게재순위에 따라 “1, 2, 3” 등으로 표시하고, 성명은 한글로 적어야 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적는다.

② 후보자 게재 순서 등을 위한 후보자 번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 추첨으로 결정한다.

제22조(투표시간) ① 투표시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② 투표를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착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 돌아야 한다.

제23조(투표.개표의 참관) ① 후보자는 선거인 중에서 투표소마다 2명 이하의 투표 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2일까지, 개표소마다 2명 이하의 개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표 참관인은 투표참관인이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② 후보자가 제1항에 따른 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투표 및 개표 참관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후보자가 선정한 참관인 밖에 없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명이 될 때까지 선정한 사람을 참관인으로 한다. 이 경우 참관인으로 선정된 사람은 본인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와 본회의 임직원은 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제24조(투표의 효력 등에 관한 이의제기) ①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 제기를 하려는 후보자 및 선거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는 선거일을 말한다)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25조(기탁금의 처리)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전액을 반환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회에 귀속한다.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0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을 본회에 귀속한다. 단, 후보자 등록 마감 이후 사퇴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기탁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5 장 당선 결정

제26조(당선인 결정) ①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후보자가 1명인 때에는 투표권을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27조(당선무효) 회장 당선인이 규정 및 규약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당선 효력이 상실된다.

제28조(회장 당선인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 당선인이 결정되면 선거일 다음날에 즉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회장 당선인을 여수시삼산면 홈페이지 또는 삼산면 게시판 및 여수시체육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6 장 보 칙

제29조(재선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후보자가 없는 경우
2. 당선인이 없는 경우
3.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무효 결정이 있는 경우

제30조(보궐선거) ①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궐선거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31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선거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중지, 경고, 시정명령,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2조(벌칙) 선거관리위원회는 규약 및 이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여 적발된 자에 대하여 본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33조(그 밖의 사항) 본회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규약 및 이 규정 등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34조(총회에서의 회장 선출) ① 본회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체육회에 제출하고 체육회 승인을 받아 대의원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장을 선출하려는 경우, 본회는 회장을 선거인단이 아닌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하는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35조(체육회의 시정 지시 이행) 회장선거의 절차, 운영 등과 관련하여 도체육회 또는 시체육회가 시정 지시를 하는 경우, 본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6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본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본회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